

# 2021년도 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 온라인 간담회 진행자료

## 1. 참여대학원생 간담회 자료

### □ 3단계 대비 주요 개선사항

항 목	3단계 (BK21 plus)	4단계 (BK21 four)
연구장학금 최저 지급액	석사과정생 : 월 6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: 월 100만원 이상	석사과정생 : 월 7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: 월 13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 : 월 100만원 이상
교육 콘텐츠 업데이트	- 인권침해 동영상 제작 - 연구윤리 교과목 자율적 수강	-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제작 (영문, 수화, 코로나 콘텐츠 추가) - 연구윤리 교과목 필수 수강
국제 학술회의 참여 인력 수	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참여인력 3인 이하로 제한	온라인 학술회의의 경우 참여인력 수 제한 폐지(on-line인 경우)
질적 평가 강화	논문 실적 등 정량적 평가 위주	1인 1건의 대표 연구업적물 제출을 통한 질적 평가 강화

### □ 사전 주요의견 수렴 결과

안건 1 (공통안건)	4단계 BK21 사업 운영 초기 참여인력으로서 비전 공유와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 방안
온라인	- 온라인 채널 공식 계정 등을 운영 (youtube 채널, 네이버 지식in, 블로그,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) - 전문 인력(대학교 학부, 대학원생, 전문 연구인력 등)의 방문이 잦은 전문 사이트(RISS-학술연구정보서비스,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)에 사업안내 게시물 및 광고 게시
오프라인	- 외부 인력이 참여 가능한 연구재단 주최 컨퍼런스 개최 - 대학원 입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한 BK21 사업 강연회 진행
안건 2 (공통안건)	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사업 진행시 건의 사항
사업비 지출 규정 완화	- 국제화경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집행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를 넓혀 다른 항목에서 더 지원할 수 있게 함. - 온라인을 활용한 지원 필요 (플랫폼 유료 사용 비용, 외국인대학원생 온라인 강의, 온라인 학회 참여 등)
사례 공유	-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대응 사례 공유
안건 3 (참여대학원생 안건)	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방안
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	- 정기적인 교육(신입생을 대상으로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) - 과거 사례나 발생한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메일이나 문자 등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상기

신고 및 모니터링 명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단 내 연구장학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각 연구실의 관리 상태 모니터링</li> <li>- 어떤 경로로 신고하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 서약서에 명시하거나 별첨자료로 추가</li> </ul>
처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규정에서 처벌을 강화(연루자 중징계, 향후 연구재단 지원사업 지원 불가능 등 페널티 필요)</li> </ul>
<b>안건 4 (참여대학원생 안건)</b>	<b>참여인력 인권침해 방지 방안</b>
제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단 차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신문고 시스템을 만들고 참여학생에 홍보</li> <li>- 대학원생의 출퇴근, 졸업 등에 대한 규정 및 페널티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</li> </ul>
상담 등 소통 창구 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기에 1회 또는 1년에 한번 참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진행</li> </ul>
강의, 사례집, 보상제도 등을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참여 교수는 강의 수강 (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의 성장을 돕는데 지원하는 방법과 이들을 co-worker로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 등에 대한 또한 참여교수의 지도 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이 좋은 성과나 발전을 보였을 때 해당 교수에 본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</li> </ul>

## 2. 신입교원 간담회 자료

### □ 3단계 대비 주요 개선사항

항 목	3단계 (BK21 plus)	4단계 (BK21 four)
참여교수 교육 및 연구 실적	신임 교수에 대한 별도 실적 포함 여부 설정 불가능	기타 업적물, 연구비 및 교육역량 대표실적에 대해서는 <b>신임교수 실적 포함여부 결정 가능</b>
참여교수 교체	기존 교수 정년퇴직으로 인한 기존 교수 참여 종료 시 별도의 총원 기준 없음.	2020년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교수 (사업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자에는 사업신청일 이후 <b>신규 임용된 교수로 변경</b> ) ※ 신청 시 신임교수 70% 이상 참여 의무화
(대학원 혁신지원비)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대학원 혁신 영역 미지원 (4단계 신규 제정)	집행 비목 내 신임교원 대상 사업비 지 출 항목 개설 ( <b>신임교원의 교육·연구 역 량 증진 비용 지출 가능</b> )
(대학원 혁신지원비) 인건비	대학원 혁신 영역 미지원 (4단계 신규 제정)	대학원 혁신을 위해 <b>신규 채용된 인력(교원 및 전담직원) 인건비로 지출 가능</b> (대학원 혁신 및 BK21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)

□ 사전 주요의견 수렴 결과

안건 1 (공통안건)	4단계 BK21 사업 운영 초기 참여인력으로서 비전 공유와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 방안
온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채널 공식 계정 등을 운영 (youtube 채널, 네이버 지식in, 블로그,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)</li> <li>- 전문 인력(대학교 학부, 대학원생, 전문 연구인력 등)의 방문이 잦은 전문 사이트(RISS-학술연구정보서비스,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)에 사업안내 게시물 및 광고 게시</li> </ul>
오프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부 인력이 참여 가능한 연구재단 주최 컨퍼런스 개최</li> <li>- 대학원 입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한 BK21 사업 강연회 진행</li> </ul>
안건 2 (공통안건)	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사업 진행시 건의 사항
사업비 지출 규정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화경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집행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를 넓혀 다른 항목에서 더 지원할 수 있게 함.</li> <li>- 온라인을 활용한 지원 필요 (플랫폼 유료 사용 비용, 외국인대학원생 온라인 강의, 온라인 학회 참여 등)</li> </ul>
사례 공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대응 사례 공유</li> </ul>
안건 3 (신임교원 안건)	신임교원으로서 BK21 사업 참여시 애로사항
신임교원 참여 시 혜택 제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임교원 참여에 대한 benefit을 4단계 BK21 사업 내 제도화</li> </ul>
사업비 지원 관련 수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임교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석사 지원 금액이 적어 지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면 좋겠음.</li> <li>- 신임교원의 경우 기존 교원 대비 대학원생 장학금 혜택에 있어 더 수혜를 주는 것을 제도화</li> </ul>
평가 기준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임교원 한정 대학원생 입학 수와 특허출원 수로 평가 등</li> </ul>
안건 4 (신임교원 안건)	참여교수 대표 연구업적물 질적 평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
전문성 기준 평가위원 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질적 평가 시 나이, 학계/산업계 등을 구분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위원 선발</li> </ul>
신임교원 한정 평가기준 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수한 신임교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선정 시 가점 추가</li> <li>- 사업 수행 초기에는 기존 교원과의 다른 평가 기준 제시 또는 평가 제외</li> </ul>

### 3. 신진연구인력 간담회 자료

#### □ 3단계 대비 주요 개선사항

항 목	3단계 (BK21 plus)	4단계 (BK21 four)
인건비 및 계약기간 기준	최저 인건비 : 월 250만원 계약기간 : 2년 이내(최대 4년)	최저 인건비 : 월 300만원 계약기간 : 1년 이상 2년 이내(최대 4년) (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)
시간강사 강의	이중소속이더라도 시간강사법 시행 이후 강의 허용	학기당 6학점 이내의 시간강의에 따른 4대보험 일부 가입 시 사업 참여가능. (증빙 및 사업단장 승인 서류 구비 시) (학내·외 불문, 3단계 지속)
대학원 혁신 지원비	대학원 혁신 영역 미지원 (4단계 신규 제정)	대학원혁신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내 학문후속세대(신진연구인력)의 교육·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비용 지출 가능

#### □ 사전 주요의견 수렴 결과

안건 1 (공통안건)	참여인력으로서 비전 공유와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 방안
온라인	- 온라인 채널 공식 계정 등을 운영 (youtube 채널, 네이버 지식in, 블로그,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) - 전문 인력(대학원생, 전문 연구인력 등)의 방문이 잦은 전문 사이트(RISS-학술연구정보서비스,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)에 사업안내 게시물 및 광고 게시
오프라인	- 외부 인력이 참여 가능한 연구재단 주최 컨퍼런스 개최 - 대학원 입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한 BK21 사업 강연회 진행
안건 2 (공통안건)	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사업 진행시 건의 사항
사업비 지출 규정 완화	- 국제화경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집행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를 넓혀 다른 항목에서 더 지원할 수 있게 함. - 온라인을 활용한 지원 필요 (플랫폼 유료 사용 비용, 외국인대학원생 온라인 강의, 온라인 학회 참여 등)
사례 공유	-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대응 사례 공유
안건 3 (신진연구인력 안건)	신진연구인력으로서 BK21 사업 참여시 건의사항
명확한 업무 지침 필요	-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‘정확한 업무 범위 지정’, ‘근무 시간 중 연구 시간 보장’, ‘행정 전담 인력의 필수 고용’ 등의 조치를 마련 -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 (장비 및 연구비) 등 필요
평가 기준 완화	- 첫 해에 실적이 미비함을 감안한 평가 필요
처벌 강화	- 관련 규정에서 처벌을 강화(연루자 중징계, 향후 연구재단 지원사업 지원 불가능 등 페널티 필요)
안건 4 (신진연구인력 안건)	참여인력 인권침해 방지 방안
제도화	- 인권침해 발생 시 교육연구단을 거치지 않고 인권침해 사건에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 -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 및 담당자가 있어야 함 - 대응할 수 있는 경로(인권침해방지 위원회, 전담 인원)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.
주기적인 안내	- 침해 사례 및 도움 요청 방법 등을 이메일 발송하여 경각심을 심어줌.